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운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491
----------	-------

발의연월일 : 2026. 3. 16.

발 의 자 : 최보운 · 김선교 · 김상훈
이성권 · 이달희 · 김성원
주호영 · 김 건 · 조배숙
김민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버스·철도의 이용과 관련하여 교통약자의 이용 보장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버스에 대해서는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등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한편 택시의 경우에는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통해 중증보행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나, 가용한 차량 수가 제한적이고, 장애인용 이동수단을 특정하는 방식이 차별로 인식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최근 제품·건축·서비스 이용 시 성별·나이·장애 등으로 인해 제약받지 않도록 하는 범용설계(Universal Design) 개념이 주목받으면서 이를 적용한 차량의 확대 필요성 또한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택시의 경우에도 이용 보장 규정을 신설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를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택시운송사업용 택시의 일정 비율 이상을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 택시로 운행하도록 하며, 장애인이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택시 이용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 본문 중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택시운송사업자”라 한다)는 택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그 가구원(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이 휠체어 탑승설비가 설치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를 각각 제16조의4 및 제16조의5로 하고,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택시의 이용 보장 등) 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

치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할 경우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제2항제2호 중 “제16조의3제3항을”을 “제16조의4제3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6조의3제2항을”을 “제16조의4제2항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체어 탑승설비를 장착·운영하
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는 휠체어 탑승설비
를 설치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
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
애인 및 그 가구원(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사람으로 한
정한다)이 휠체어 탑승설비가
설치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6조의3(택시의 이용 보장 등)

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
른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
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
록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
항에 따라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할 경우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제16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등) (생략)

제16조의4(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생략)

제33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제1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

③ 제1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생략)

수 있다.

제16조의4(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등) (현행 제16조의3과 같음)

제16조의5(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현행 제16조의4와 같음)

제3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제16조의4제3항-----

③ 제16조의4제2항-----

-----.

④ (현행과 같음)